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dopted by decision No. 28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January 31, 1993, amended by Decree No.484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February 26, 1999.

1999 Version (In regard of inspection on cargo)

http://nk.chosun.com/economy/economy.html?ACT=EcoLawDetail&law_id=163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대리업무 규정

1999 년 3월 21일 내각 결정 제 27 호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짐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거쳐 제 3 국에 중계수송하려는 짐임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다른 나라 중계짐수송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중계점임자대리업무 (이 아래부터는 대리업무라 한다) 에는 다른 나라 점임자의 위탁에 따라 중계하는 점의 접수, 발송, 작업 및 보관 수속, 세관수속, 검사 및 검역 수속, 비용청산, 사고처리. 수송조직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제 3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대외운수기관은 지대국경통과지점, 항, 항공역에 다른 나라 짐임자대리기관 (이 아래부터는 짐임자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고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 4 조 대리업무와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지대안의 시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 5 조 이 규정은 짐임자대리기관과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적용된다.

제 6 조 짐임자대리기관을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짐임자대리기관창설신청문건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 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창설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짐임자대리기관명, 소재지, 창설근거, 대리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히고 대리업무와 관련한 다른 나라 짐임자의 의향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승인기관은 짐임자대리기관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 일 안으로 검토하고 짐임자대리기관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창설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짐임자대리기관창설승인문건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 8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지대관리기관에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여야 한다.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짐임자대리기관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신청문건에는 짐임자대리기관명, 소재지, 책임자명, 인원수 같은 것을 밝히고 짐임자대리기관창설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대관리기관은 짐임자대리기관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 일 안으로 검토하고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한 다음 등록증을 발급해 주거나 짐임자대리기관등록을 부결하여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 10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짐임자와 대리업무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리업무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날자, 대리업무의 내용, 다른 나라 짐임자의 임무, 짐임자대리기관의 임무, 중계짐수송 련계방법, 비용과 그 청산방법, 문건송달과 통신련계 방법, 사고처리와 제재 및 분쟁해결, 계약리행기간,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 11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을 해당 수송수단에 실어보내려고 할 경우 짐싣기 5 일 전까지 배짐 증권 또는 운송장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짐임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 짐수송기관과 해당한 짐작업계약, 짐보관계약, 짐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밝혀야 한다.

- 1. 짐작업계약문건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수송수단명, 도착예정날자, 작업을 시작하는 날자와 시간, 작업을 끝내는 날자와 시간, 작업비, 짐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 2. 짐보관계약문건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자, 보관기관, 보관비, 짐의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 3. 짐수송계약문건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종류, 개당 중량, 개당 용적, 짐보내는 지점, 짐도착지점, 경유지점, 짐보내는 사람과 짐받을 사람, 수송수단별 종류와 요구수량, 수송기간, 수송비, 짐수송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 13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 짐수송기관에 짐의 작업, 보관, 수송과 관련한 의뢰문건 또는 신고문건을 내여 합의하였을 경우 합의한 의뢰문건 또는 신고문건을 계약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 14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을 기차로 실어보내려는 경우 수송이 시작되기 전달 20 일까지 월짐차요구문건을 철도운수기관에, 중계짐을 비행기로 실어보내려는 경우에는 중계짐반출입신고문건을 항공역에 내야 한다.

제 15 조 다른 나라 짐임자는 중계짐을 자기 자동차로 실어나르려는 경우 직접 또는 짐임자대리기관을 통하여 국경통과 5 일 전에 지대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 16 조 공화국령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짐, 국제적으로 금지되여있는 짐은 중계짐으로 수송할 수 없다.

제 17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이 중계지점에 도착하였을 경우 수송기관으로부터 수송문건을 넘겨받아 수송수단에 짐실은 상태를 확인한 다음 짐보관기관에 짐을 맡기고 짐보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 18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보관된 중계짐을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려는 경우 짐보관증과 세관의 경유를 받은 출고의뢰문건를 짐보관기관에 내고 짐을 넘겨받아야 한다.

제 19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다른 나라에 중계짐수송을 위한 짐실이작업이 끝나는 차제로 배짐 증권 또는 운송장과 같은 필요한 문건을 수송기관으로부터 받아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 20 조 중계짐을 싣거나 부릴 때의 수량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검수, 검량한 수량에 준한다.

제 21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 곧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나라 짐임자는 빠른 시일안에 사고난 중계짐의 처리대책안을 짐임자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22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의 사고와 관련한 조서를 만들어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한 다음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제 23 조 중계짐수송문건에 지적된 수량보다 넘겨받는 중계짐의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짐임자와 합의한 다음 세관의 승인밑에 짐임자대리기관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 24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짐임자의 요구에 따라 중계짐의 검사 및 검역을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다. 중계짐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은 그 짐을 싣거나 부리우는 장소에서 한다. 검사 및 검역 기관은 중계짐의 검사 및 검역이 끝났을 경우 해당한 확인문건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 25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게짐의 검사 및 검역 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곧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6 조 중계점의 취급과 관련한 비용의 청산은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과 점임자대리기관 사이에 한다. 점임자대리기관은 해당 기관과 비용청산을 한 다음 종합계산서를 만들어 다른 나라 점임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 27 조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료금기준, 작업량 기준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 28 조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료금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에 의한 조선원의 환산은 해당시기 국제시세에 따라 지대안의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이 발표한 교환시세에 따른다.

제 29 조 다른 나라 짐임자는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비용을 대리업무계약에 따라 짐임자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30 조 대리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이 처리한다.

제 31 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적용과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1999 Version (In regard of retrieving statistical data on Rason)

http://nk.chosun.com/economy/economy.html?ACT=EcoLawDetail&law_id=7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통계규정

1999 년 3 월 6 일 내각 결정 제 19 호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사회경제실태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장악하고 통계자료의 관리 및 리용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통계는 사회경제실태와 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량적으로 반영하며 사회경제적 현상을 인식하고 실천활동을 목적지향성있게 하게 하는 수단이다. 통계에는 경제, 문화의 발전수준과 관련한 자료, 자연부원, 인구, 생계와 관련한 자료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3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있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계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 4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대안의 통계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중앙통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대통계기관이 한다.

지대통계기관은 지대의 사회경제실태에 맞게 통계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 6 조 통계시초계산단위는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통계시초계산단위에는 전임 또는 겸임 통계원을 두어야 한다.

제 7 조 지대안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지대총생산액으로 계산하여 작성한다.

제 8 조 지대안의 통계사업은 중앙통계기관이 정한 통계방법론에 따라 하여야 한다. 통계방법론은 지대의 특성에 맞게 부단히 완성하여야 한다.

제 9 조 통계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표기아래에는 외국어표기를 할 수도 있다.

제 2 장 통계장악

제 10 조 통계장악을 정확히 하는 것은 통계사업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지대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장악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1 조 통계장악은 통계보고와 통계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통계보고에는 월보, 분기보, 반년보, 계절보, 년보가 포함되며 통계조사에는 동시조사, 일제조사, 선택조사, 단일조사가 포함된다.

제 12 조 통계장악은 중앙통계기관이 정한 절차와 방법, 지표목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중앙통계기관이 정한 절차와 방법, 지표목록은 자의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제 13 조 경영활동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통계보고의 방법으로 장악하며 사회경제실태, 인구, 생계, 물가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통계조사의 방법으로 장악한다.

제 14 조 자연재해, 사고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지대통계기관이 직접 장악한다.

제 15 조 지대통계기관은 필요한 통계자료를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대통계기관이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정한 기간안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16 조 통계지표목록밖의 통계를 장악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통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악한 통계를 지대통계기관과 해당웃기관에 내야한다.

통계지표목록밖의 통계는 해당 기관에만 내야 한다.

제 18 조 통계자료는 문건으로 내야 한다.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는 방법으로도 통계를 낼 수 있다.

제 19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대통계기관과 해당 웃기관에 낸 통계를 자의대로 고칠 수 없다.

제 20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록을 한 날부터 10 일안에 기업등록정형을 지대통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3 장 통계시초계산

제 21 조 통계시초계산을 바로 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를 장악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시초 계산단위와 계산대상,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계량계측사업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 22 조 통계시초계산은 표준시초계산 양식에 맞게 하여야 한다. 표준시초계산양식은 지대통계기관이 정한다.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표준 시초계산양식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통계시초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 23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시초계산지표의 통일성과 계산방법의 유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4 조 지대총생산액은 생산액과 봉사 수입액으로 계산한다.

제 25 조 투자액실적은 지대안에 투자한 실적금액으로 계산한다.

제 26 조 생산액실적은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별 판매량에 판매실현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27 조 봉사수입액실적은 각종 봉사를 제공한 다음 실지 받은 봉사액으로 계산한다.

제 28 조수출액실적은 세관을 통과하여 지대밖으로 내보낸 제품별 수량에 해당 제품의 넘겨주기 가격으로 계산하며 수입액실적은 지대안에 들여오는 제품별 수량에 제품별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제 29 조 류통액실적은 상품을 판매한 다음 실지 받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 30 조 세금납부실적은 기업소득, 개인소득과 같은 소득에 의하여 실지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 31 조 통계의 시초계산과 관련한 실적장악은 해당 통계기간의 첫날 0 시부터 마지막날 24 시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제 32 조 통계계산의 화폐단위는 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교환시세는 해당 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하는 환률에 따른다.

제 33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시초계산단계에서 거짓통계자료를 내거나계량계측하지 않고 통계자료를 계산할 수 없다.

제 4 장 통계자료의 관리 및 리용

제 34 조 통계자료는 비밀문건으로 취급한다. 지대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자료의 관리 및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통계자료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35 조 지대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악한 통계를 제때에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의 보존기간은 중앙통계기관이 정한다.

제 36 조 지대통계기관은 통계자료를 부문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여야 한다.

종합정리된 통계자료는 해당 문헌지도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37 조 지대통계기관의 통계자료는 열람할 수 있다. 지대통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열람하려고 할경우에는 열람목적과 통계지표, 열람자의 직위와 이름을 밝힌 열람신청문건을 지대통계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계자료는 정한 장소에서만 열람하거나 발취, 복사할 수 있으며 발취, 복사한 통계자료는 정한 목적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제 38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과 개별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

제 39 조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승인없이 공개할 수 없다.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계자료를 공개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지대안의 로력원천, 자연부원, 지대총생산액과 같은 통계자료는 중앙통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

제 41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개선하여야한다.

제 42 조 지대통계기관은 지대개발과 투자정형, 지대안의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실태자료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앙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감독통제

제 43 조 지대통계기관은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44 조 기관, 기업소와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는 지대통계기관이 맡아한다. 기관, 기업소는 매달 계획실행에 대한 통계를 정해진 날자안으로 지대통계기관에 내고 계획실행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대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매월 현지에 나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평가해 주어야 한다.

제 45 조 지대계획기관은 기관, 기업소에 시달한 인민경제계획사본을 지대통계기관에 넘겨주어야한다. 기관, 기업소는 계획실행평가주기에 따라 중앙계획, 지대계획, 기업소계획을 지대통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계획실행기간이 지난 다음에 조절된 계획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46 조 지대통계기관은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계자료와 현물을 검열할 수 있다. 이경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7 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몰수, 벌금적용과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